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직원의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대상자) ① 명예퇴직 심사대상자는 본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으로서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자 중에서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자로 한다.

② 희망퇴직 심사대상자는 본교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으로서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자 중에서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신청의 제한) ① 매학기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신청 마감일 현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 상태가 되어 자진 퇴직하는 자. 다만,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직종(국내대학)으로 전직하기위해 퇴직하려는 자<개정 2012. 6. 1.>
5. 삭 제 <2012. 2. 2.>
6. 기타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총장은 교직원 수급계획 및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의 허가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근속기간의 산정) 근속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① 근속년수의 계산은 본 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 발령된 날로부터 퇴직전 날까지의 년월수에 의한다.
- ②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연구휴직 및 육아휴직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5조 (퇴직수당) ①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② 명예퇴직자의 퇴직수당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에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포함한 금액에 정년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의 60%를 지급한다. 단, 정년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여월수를 60개월로 계산한다.<개정 2008. 1. 9.>

③ 희망퇴직자의 퇴직수당은 잔여년수와 상관없이 퇴직당시 월봉급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80%를 지급한다.

④ 전항의 월봉급액은 본 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으로 하며, 정년잔여월수 산정에 있어서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현재 연봉제로 임용된 교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퇴직수당은 정년잔여월수를 기준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 (공지) 삭제 <2012. 2. 2.>

제7조 (신청절차)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별도의 공고없이 퇴직예정일 30일전에 소정의 신청서(별표1, 별표2, 사직서)를 교원은 교무처장에게, 직원은 소속기관장을 경유하여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이 허락된 교원은 해당 학기 강의를 종료하여야 하며 퇴직일 이후의 강사료는 시간강사료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 2. 2.>

제8조 (심사위원회) ①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 및 직원인사위원회로 같음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9조 (심사·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퇴직대상자를 선정, 총장에게 추천한다.

1. 공상으로 폐질 상태에 이른 교직원

2. 장기근속 교직원

3. 상위직 교직원

② 전항의 폐질 상태라 함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 제1항과 의료보험 진료의료기관장이 발급하는 진단서(소견서)를 참고하여 판정한다.

③ 총장은 제1항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퇴직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10조 (결정통지) 퇴직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교무처장 또는 총무처장은 그 결과를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통지한다. 단, 직원의 경우 노사협의회 직원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명예퇴직신청의 철회) 삭제 <2012. 2. 2.>

제12조 (사직원) 퇴직대상자는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신청이 허락될 경우에 한하여 사직서를 인정하며, 불허될 경우에는 별도의 사직의사를 확인한 후 처리한다. <개정 2012. 2. 2.>

제13조 (수당지급시기) 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14조 (위로금) 공상으로 폐질상태에 이르러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의 수령권자) 수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16조 (퇴직수당의 환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수당은 환수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결정으로 시행한다.

1. 동일직종(대학)으로 전직한 경우

2. 삭제 <2012. 2. 2.>

3. 본 대학에 신규임용(재임용)된 경우

제17조 (사무관장)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사무는 교원은 교무처에서, 직원은 총무처에서 관장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② (명예퇴직 촉진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 사이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5조 2항의 퇴직수당외에 퇴직당시 월봉급액에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포함한 금액에 정년 퇴직일까지의 잔여기간에서 60개월을 제외한 기간을 곱한 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명예퇴직 촉진을 위한 경과조치) 2012년 2월 2일자 시행부칙의 명예퇴직촉진을 위한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명예퇴직 신청기간은 2012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자로 한다.
 2. 명예퇴직자의 퇴직수당은 본 규정 제5조 2항의 퇴직 수당에 대하여 60개월 이내는 70%를 지급하고 60개월을 초과하는 잔여 기간은 45%를 지급한다.
 단, 교원의 퇴직일은 2012년 8월 31일자로 하며, 직원은 2012년 5월 31일자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명예퇴직 촉진을 위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일자 시행부칙의 명예퇴직촉진을 위한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명예퇴직 신청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자로 하며, 퇴직일은 2012년 8월 31일자로 한다.
 2. 명예퇴직자의 퇴직수당은 본 규정 제5조 2항의 퇴직수당에 대하여 60개월 이내는 70%를 지급하고 60개월을 초과하는 자는 잔여기간 중 최대 60개월 까지 45%를 지급한다.

[별표1]

명예퇴직신청서

소속 :

직급 :

성명 :

위 본인은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원인 : _____(인)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2]

희망퇴직신청서

소속 :

직급 :

성명 :

위 본인은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희망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원인 : _____(인)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